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662 호

제출년월일 : ２０２１년 9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08.27. ~ 2021.09.1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1.08.18.)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1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6년 12월 31일**---------- ---------- ---------- ---------- ----------.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도로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재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심의회 구성)** ① ---------- ---------- --- **11명** ----------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